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광진구의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1219호
----------	--------

2015. 11. 26  
복지건설위원회

**1. 제 안 자** : 광진구청장

## 2.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14. ~ 11. 2.) 결과 : 의견없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2014년 12월30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5년 11월 1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조례 표준안과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를 명시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조례안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재 구성·운영 중인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11명)가 대신하도록 정하여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2015년 11월 현재 광진구의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현황은 785건에 7억1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